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다214186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대표이사 장동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송평근, 김범진, 하준필, 김상우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3976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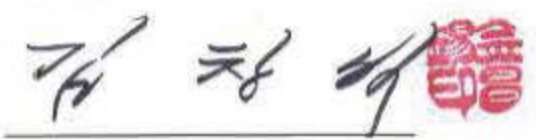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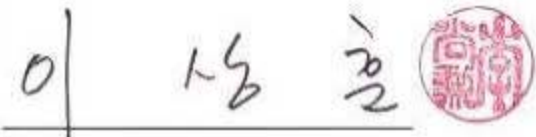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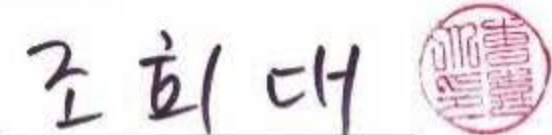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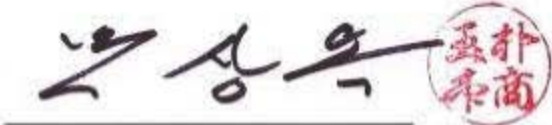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	

## 원고 명단

1. 유

2. 명

3. 양

4. 김

5. 강

6. 김

7. 김

8. 안

9. 박

10. 신

11. 전

12. 조

13. 강

14. 고

15. 박

16. 조

17. 최

18. 최

# 정본입니다.

2016. 7. 14.

대법원

법원사무관 김종필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